『구미시「공항경제권 거점도시」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』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08월 25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0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09월 02일

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김 은 영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('22.1. 시행)으로 지역의 특징 및 실질적인 행정수요,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됨.
- 구미시는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내륙 최대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산업구조, 공항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·재정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- 이에 특례사무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의 추진을 위하여「지방 자치법 시행령」제120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O 추진방향

• 비전설정 :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선도 〈공항경제권 특례도시 구미〉

• 목 표 :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지형 변화와 통합신공항 배후도시

건설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사무 발굴

O 추진내용

[산업입지개발지침]

▶ 산업입지 개발, 산업단지 지정·개발·지원 시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지역 의견 제출

[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]

▶지역 실정과 여건,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

[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]

특례사무 신청목록 ▶지역 산업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주력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 추진

[협동화사업에 대한 사무]

▶ 산업단지 내 기업체 협동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동종기업 유치로 집적화 효과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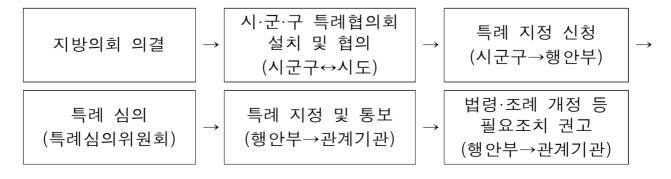
[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사무]

▶ 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의 집단화·협업화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과 입주기업 혜택 제공을 통한 투자여건 조성

[도시·군관리계획에 대한 사무]

►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권한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

O 추진절차

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1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

O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O 합 의: 관련부서(기업지원과, 신성장산업과, 도시계획과)와 합의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O 본 동의안은

•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지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O 검토 결과,

- 산업단지 지정, 지역산업진흥 등 산업 관련 특례를 통해 통합신 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, 새로운 미래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고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, 도(道)의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 시가 주도하는, 특화된 행정 사무를 가능하게 해줄 〈특례사무 지자체 지정〉 신청은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<u>원안가결</u>